

1. 개정 이유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종류, 수량, 위반장소·일시 등을 게시판·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관리·공고 등 절차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 철거한 시설물을 보관 시 행정관청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신설

* 시설물의 정보(양식업의 종류, 양식종류, 수량, 사진 등), 위반장소, 보관일시·장소 등

** 보관대장(별지 제47호의2), 반환신청서·인수증(별지 제47호의3)

나.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 마련(안 제56조의3 신설)

-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별표 9 신설) :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

다. 명예감시원의 자격·임무 등 절차 마련(안 제56조의4 신설)

- 명예감시원의 추천 자격·대상·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5. 00. ~ 06. 0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양식시설물의 관리 등) ① 면허권자는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양식시설물(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관한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양식시설물의 정보(양식업의 종류, 양식수산물의 종류, 수량, 사진 등)
2. 위반 일시 및 위반 장소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②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면허권자가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의3(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양식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면허·허가를 받은 면허·허가번호 및 양식업 종류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제56조의4(양식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식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양식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양식장의 유해물질 등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홍보 및 불법 양식행위의 감시·신고
2. 그 밖에 양식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명예감시원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조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식시설물의 보관대장

면허권자: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시설물 반환신청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식시설물의 품명		양식시설물의 수량
양식시설물의 형태		
위의 양식시설물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양식시설물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식시설물의 품명		양식시설물의 수량
양식시설물의 형태		
위의 양식시설물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제56조의3제1항 관련)

1. 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浮標)·부자(浮子)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에 제56조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순서대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예시)

양식시설물 소유자의 성명(연락처): ○○○(000-0000-0000)

면허·허가를 받은 면허·허가번호(양식업의 종류): ○○○호(○○양식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6조의2(양식시설물의 관리 등)		
		① 면허권자는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양식시설물(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관한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양식시설물의 정보(양식업의 종류, 양식수산물의 종류, 수량, 사진 등) 2. 위반 일시 및 위반 장소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②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면허권자가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u><신 설></u>		제56조의3(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 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양식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면허·허가를 받은 면허·허가 번호 및 양식업 종류
-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제56조의4(양식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식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양식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양식장의 유해물질 등

	<u>안전관리에 관한 지도·홍보</u> <u>및 불법 양식행위의 감시·신고</u> 2. 그 밖에 양식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 촉하여야 한다.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 임된 때 2. 명예감시원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 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하여 조례로 한다.
--	---